

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의 안 번호	
----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2.02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·봉산리, 장천면 하장리 일원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구·경북경제자유구역(구미디지털산업지구) 및 연접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과 적법훼손지인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일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,
-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□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
- 대구·경북경제자유구역 일원
 - － 위 치 :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, 봉산리 및 장천면 하장리 일원
 - － 면 적 : 보전관리지역(715,960㎡), 생산관리지역(31,188㎡)
→ 계획관리지역(747,148㎡)
- 적법훼손지
 - － 위 치 :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일원
 - － 면 적 : 보전관리지역(9,553㎡) → 계획관리지역

3. 참고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

1) 용도지역

○ 용도지역 총괄표

구 분	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	616,251,000	—	616,251,000	100.00	
주거 지역	소계		25,842,518	—	25,842,518	4.19	
	일반 주거	제1종일반주거지역	13,475,187	—	13,475,187	2.19	
		제2종일반주거지역	10,313,659	—	10,313,659	1.67	
		제3종일반주거지역	1,568,545	—	1,568,545	0.25	
	준주거지역		485,127	—	485,127	0.08	
상업 지역	소 계		3,463,297	—	3,463,297	0.56	
	중심상업지역		—	—	—	—	
	일반상업지역		2,874,910	—	2,874,910	0.47	
	근린상업지역		505,387	—	505,387	0.08	
	유통상업지역		83,000	—	83,000	0.01	
공업 지역	소 계		29,548,546	—	29,548,546	4.80	
	전용공업지역		—	—	—	—	
	일반공업지역		26,481,905	—	26,481,905	4.30	
	준공업지역		3,066,641	—	3,066,641	0.50	
녹지 지역	소 계		126,806,602	—	126,806,602	20.58	
	보전녹지지역		2,330,355	—	2,330,355	0.38	
	생산녹지지역		12,396,743	—	12,396,743	2.01	
	자연녹지지역		112,079,504	—	112,079,504	18.19	
관리 지역	소 계		135,502,840	—	135,502,840	21.98	
	보전관리지역		62,762,217	감) 725,513	62,036,704	10.07	
	생산관리지역		8,760,609	감) 31,188	8,729,421	1.41	
	계획관리지역		63,980,014	증) 756,701	64,736,715	10.50	
농 립 지 역			265,029,466	—	265,029,466	43.01	
자연환경보전지역			30,057,731	—	30,057,731	4.88	

○ 용도지역 변경내용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변 경 사 유
		기정	변경			
A 소 계				715,960	－	
A1	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195-6일원	보전 관리 지역	계 획 관리 지역	564	100	－개발계획의 수립이 완료된 구미 경제자유구역 내 및 연접지역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 로 변경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
A2	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217 일원 장천면 하장리 970-1 일원			715,396		
B 소 계				31,188	－	
B1	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966 일원	생 산 관리 지역	계 획 관리 지역	4,787	100	－개발계획의 수립이 완료된 구미 경제자유구역 내 생산관리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 리를 도모
B2	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900-2일원			3,310		
B3	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909-1일원			1,422		
B4	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48 일원			21,669		
C 소 계				9,553	－	
C	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38-3 일원	보전 관리 지역	계 획 관리 지역	9,553	100	－보전관리지역 내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토 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를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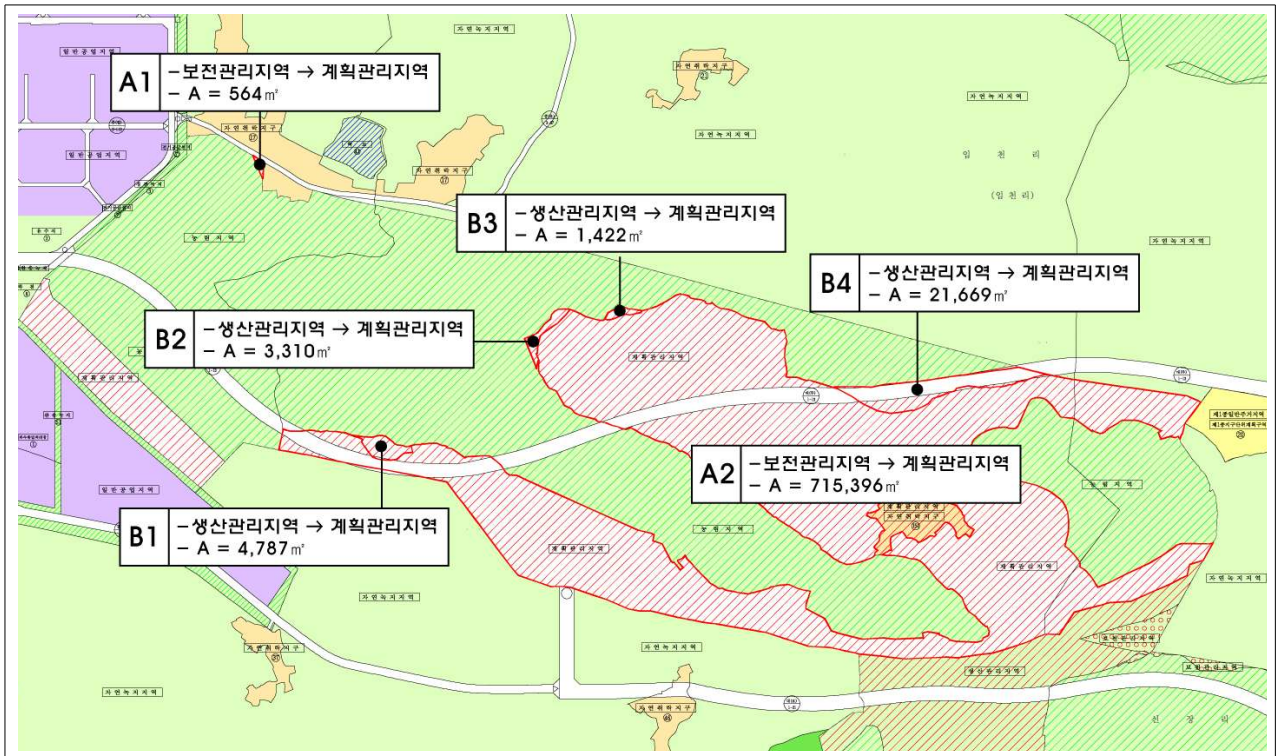
■ 보전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 (A+C) = 725,513㎡

■ 생산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 (B) = 31,188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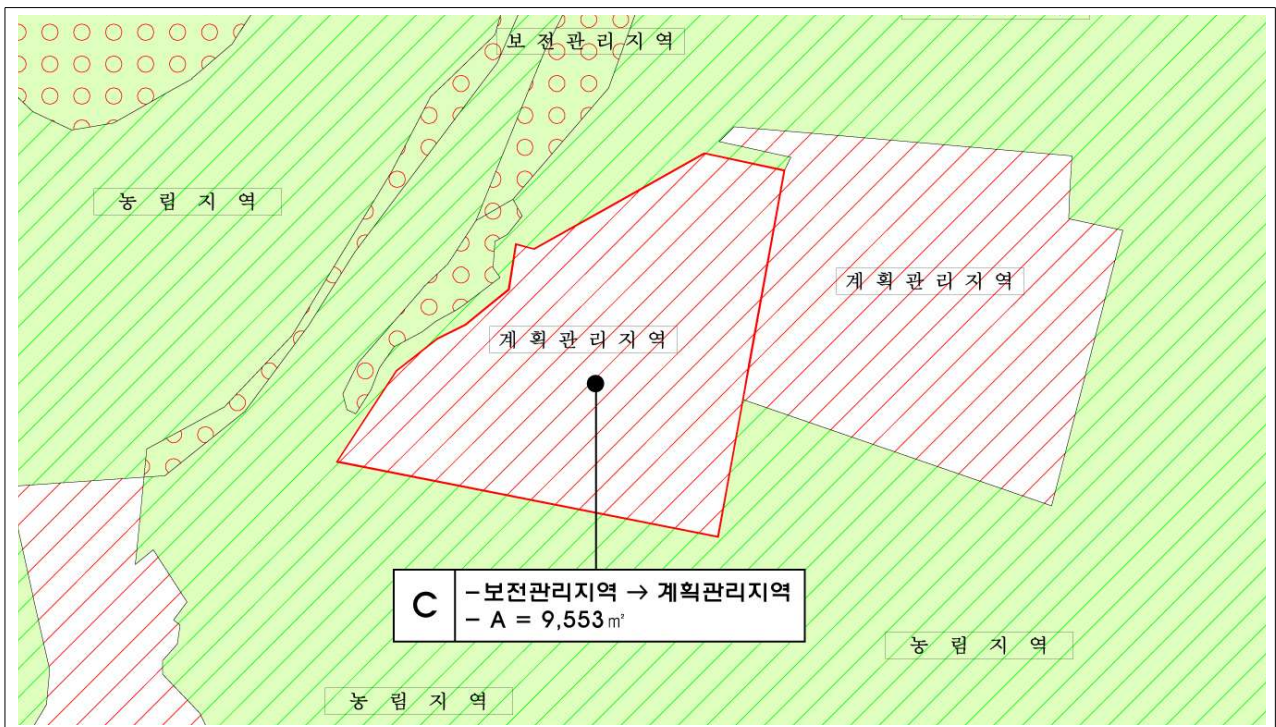
합 계 = 756,701㎡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도

－ 산동면 임천리(경제자유구역) 일원



－ 옥성면 덕촌리(적법훼손지) 일원



《참 고 사 항》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법 제28조 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⑤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시행령 제22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
2.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
가. 도로중 주간선도로

나. 철도중 도시철도

다.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
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)

마. 유통업무설비

바. 학교중 대학

사. 운동장

아. 삭제

자.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
차. 화장장

카. 공동묘지

타. 납골시설

파.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)

하. 폐기물처리시설

거. 수질오염방지시설